

농림수산식품부



닭·오리고기 전면 포장유통 실시 등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11. 26부터 개정시행

농림수산식품부는 닭고기 등의 포장유통, 도축검사 담당자의 업무량개선, 축산물판매업의 세부 영업 신설, 위생교육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이 2010. 11. 26자로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향상이 법의 주목적임을 반영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법률 제명을 변경

개정·시행되는 법령에 따르면 닭·오리 고기와 식용란(계란)에 대하여 포장유통을 의무화하는 등 위생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닭·오리 도축량이 하루 5만수 이상인 도축업 영업자에게만 적용되는 포장유통의무가 2011. 1월부터는 닭·오리 도축업 영업자 전체와 도축된 닭·오리 고기를 보관·운반·판매하는 영업자에까지 전면 확대 실시된다.

※전면 시행에 따라 재래시장 등에서 포장되지 않는 닭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모든 닭·오리는 포장상태로 유통·판매되어야 함

특히, 위생관리상 통제 없이 유통판매 되어 온 식용란(계란)에 대하여 2011.4월부터는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하여야만 유통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계란의 포장유통의무의 시행주체가 되는 식용란수집판

매업 영업자를 신설하고 이들이 위생적으로 준수해야 할 규정을 마련

아울러, 닭·오리 도축검사 담당자의 기준 업무량을 연차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검사를 강화하여 축산물이 보다 안전하게 생산·공급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새로운 위해요소의 출현과 축산식품 위생관리제도의 변경에 대응하여 도축업, 가공업 등 영업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였고, 원격교육(인터넷 교육)도 가능토록 하여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높아진 위생관리에 대한 기대수준에 부응하여 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영업자의 위생관리와 관리기관의 안전관리 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축산물위생관리법령 개정 주요 내용

1. 축산물의 포장 의무 확대 (제12조의7)

가. 제·개정 이유

- 축산물의 포장 유통을 확대하여 위생수준을 제고할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현재는 닭·오리를 1일 평균 5만수 이상 도축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만 닭·오리의 식육을 포장하여 유통하도록 의무 부과 중

※근거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0조의2

나. 제·개정 내용

- 닭·오리 도축업 영업자 전체와 닭·오리의 식육을 보관, 운반, 판매하는 영업자들로 포장 의무화대상을 확대
-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에게 계란을 포장하여 유통

News

하도록 의무 부과

다. 입법효과

- 닭·오리 식육의 안전성이 제고되고 계란에 대한 위생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그 밖의 참고사항

1) 포장 유통 의무화 기본계획(2004년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종합대책)

(1) 목적

- 포장 유통(표시)으로 수입 닭·오리고기와 구별로 차별화 가능
- 비 포장 상태로 유통되는 닭·오리고기의 재 오염 기회 차단

※한국 소비자보호원 및 계속협회에서 개선책 마련 요구

(2) 포장의 정의(안)

- 닭·오리 지·정육을 용기에 담아 포장한 후 봉인하거나, 개별진공포장을 한 것으로 서 외부에 합격검인 및 표시기준에 의한 표기가 된 제품을 말함

(3) 포장 원칙

- ① 닭·오리 도축장 외부로 반출되는 지육(자체 가공제외)의 포장
 - 포장 후, 합격검인 및 포장외부에 도축장명, 소재지, 함량 등 표시한 후 유통
- ② 닭·오리고기 가공장 생산 부분육, 정육 등의 포장
 - 용기에 담아 포장한 후 생산도축장·생산가공장 소재지, 함량 등을 외부에 표시하고 자체위생관리인의 확인 후 유통
- ③ 닭·오리고기 판매장(백화점, 대형마트, 래시장, 정육점)에서 지육 또는 부분육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경우

- 생산시 포장완료된 닭·오리 고기를 포장상태 그대로 판매

④ 수입된 닭·오리고기를 가공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도 국내산의 경우와 같이 포장, 표시 등을하도록 의무화

(4) 의무시행 시기

- 닭·오리도축장의 도축규모에 따라 단계별 포장유통 시행
 - 1일 도축 8만수 이상 : 2006. 9. 22부터 시행
 - 1일 도축 5만수 이상 : 2008. 6. 22부터 시행

※2009년 기준으로 닭·오리를 1일 평균 5만수 이상 도축하는 20개 도축업체(전체51개)에서 전체 도축두수(닭6억8천만수)의 83%수준을 포장유통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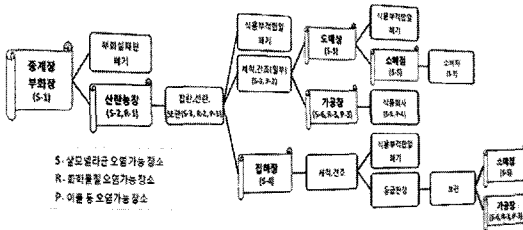
※계란도 상당량이 이미 포장유통 중임

2) 국내 계란 산업 현황

- 산란계 농가수/사육수 : (2000) 2,601호/51백만수 → (2009.9) 1,712/62
 - 3만수 이상 사육 전업농/사육비중 : (2000) 450호/전체의 63% → (2009.9) 604/75
- 2008년 생산량은 601천톤(10,838백만개), 생산액 11,586억원
 - ※농림어업 중 6위, 축산업 중 5위(돼지·한우·우유·닭·계란順)
 - 소비량은 1인당 11.2kg(224개) : (2000) 10.3kg → (2008) 11.2
- 계란생산량 중 68%는 생란(식용란)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32%는 급식·식품가공장 등의 대량수요처로 소비·유통(가공용은 생산량 중 7~8%로 추정)

• 2009년 총 383건, 2,928톤(9,310천불)의
알·알가공품이 수입됨

3) 계란의 위해요소 발생지점



2. 식용란수집판매업 신설 (제21조제7호바목)

가. 제·개정 이유

- 계란 소비량 증가에 따라 소비자의 계란 안전성에 관한 요구도 확대되고 있어 혁신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
 - (사)한국계란유통협회는 계란유통업에 대한 법제화를 건의
 - 소비자시민모임 등은 식용란(닭·오리·메추리의 알)의 신선도 불량 등을 지적하고 보존·유통기준, 표시 등 제도개선을 요구(2009.7)
-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식용란의 생산·유통 주체 중 일부(알가공업)에 대해 위생관리 책임 부여
 - 양계장·계란집하장 및 계란유통상에 대한 위생관리 규제수단 미비

※ 「축산법」, 「가족진염병예방법」은 양계업·계란집하장에 대해 산업진흥 및 질병예방 차원에서 관리

※ 근거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

나. 제·개정 내용

- 계란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축산물판매업의 세부영업으로 신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활동을 하도록 함.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 개정안〉

제21조(영업의 세부종류와 범위)

7. 축산물판매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사. 식용란수집판매업 : 식용란(닭의 알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집·처리하거나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만, 자신이 생산한 식용란 전부를 다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 등록대상이 아닌 양계업 또는 포장된 식용란을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을 제외한다.

다. 입법효과

- 계란의 유통 및 판매 전반의 위생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3. 도계장 책임수의사(검사담당자)의 1일 검사업무량 개선(별표1)

가. 제·개정 이유

- 현행 규정에 따르면 도축장 자체검사원의 1일 1인 적정 검사량을 정하지 않고 전년도 검사량에 따라 자체검사원 수만 확보하면 1일 검사량을 제한하지 않아 도축검사 부실 우려가 제기됨(감사원 통보사항)

※ 현재 가축의 식육은 시·도 검사관이 검사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닭·오리 등의 검사는 도축업체의 책임수의사의 검사로 대신하고 있음

나. 제·개정 내용

- 자체검사원의 기준업무량도 검사관과 동일한 방식으로 정하는 한편 검사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1인 추가에 따른 검사량 증가분을 현행 4만수에서 2만수로 조정함.

- 다만, 관련 협회의 건의 검토 결과 검사담당자 (책임수의사)의 채용 어려움을 감안하여 단계 적 시행(시행일 : 2011.11.25까지 4만수, 2011.11.26~2012.11.25 3만수, 2012.11.26 이후 2만수)

다. 입법효과

- 검사 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닭·오리 식육 등 축산물의 안전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농수산식품 검역검사기관 일원화 추진

농식품부 소속 검역검사 3개 기관을 통합 농수산 식품검역검사기관 설립 추진

농림수산물식품부는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체계의 효율적 구축을 위하여 농축수산물 3개 검역검사 기관(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을 통합한 농수산식품검역검사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농수산식품검역검사기관의 조직은 현재의 3기관 3부, 27과, 2재배관리소, 24지원, 33사무소를 권역별로 광역화 하여 현장중심으로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개편하고, 인력은 현재의 3개 기관 정원을 유지하되, 기관통합으로 발생하는 잉여 공통인력은 위험평가, 수산, 신종위해물질, 검역현장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에 배치할 계획이다.

통합 일정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지만, 3개기관의 2012년 혁신도시 이전계획과 관련하여 2012년 혁신도시 이전까지는 본부를 경기도 안양에 두고, 2012년 이후에는 경북 김천 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본부의 수산물안전분야는 당초 수산물품질검사

원이 부산 혁신도시의 해양수산클러스터로 이전하기로 한 계획과 부산의 수산업 비중, 수산업계의 여론 등을 감안하여 부산 혁신도시(동삼지구)에 두기로 하였다.

농식품부는 농수산식품검역검사기구 설립으로 분산된 조직과 인력 운영을 효율화 하여 대국민 검역검사 서비스 수준을 크게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관 간 인력 및 시설의 공동 활용을 통해 농축수산물 수입량 증가에 따른 검역검사 수용에 효율적 대응이 기대된다.

농수축산물에 대한 검역검사 기능을 총괄하는 기관의 출범으로 방역체계 구축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연계성도 강화하게 되며, 기관 통·폐합에 따른 기관 유지비 감소 등을 감안할 때 매년 10억원 이상의 예산 절감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AI 청정국 유지를 위한 방역대책 추진에 농가 등 적극참여 요청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AI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계절을 맞아 AI 청정국 유지를 위한 방역대책에 농가 및 축산관련자와 해외여행객들의 적극적인 방역활동 참여를 당부하였다.

최근 AI 상시예찰에 따른 오리농장의 검사결과 전남 장성 등에서 고병원성 AI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저병원성 A(H5N7형)가 검출되고, 일본에서도 지난 10월 14일 홋카이도의 야생오리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바이러스 검출보고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동절기 철새유입기 도래와 국내의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분리가 지속적으로 분

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철저한 소독과 신속한 신고로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는 투철한 방역의지를 가지고 농가에서는 매일 가축 상태를 관찰하고 질병 의심 시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1588-4060/1588-9060)하는 한편 매일 농장 소독 및 외부인의 농장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실시하고, AI 발생국 해외 여행객은 공항·만 입국시 검역원에 자진신고 하는 등 방역 업무에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검역원에서는 지속적인 AI 청정국 유지를 위해 24시간 상황보고 체계를 유지하고, 2010년도 [AI 예방 계획]에 따른 중점관리지역 등과 오리농가 예찰, 농가 및 해외 여행객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참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농가 행동수칙

- ① 매일매일 가축을 세심히 관찰하고 의심증상이 보이면 즉시 방역당국(☎ 1588-4060, 1588-9060)에 신고
- ② 농장소독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
 - 농장 출입구에는 발판 소독조, 분무소독시설 등을 설치하고 소독 생활화
 - 계사에 철망 설치 등으로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
- ③ 닭 농가와 오리 농가간 상호 접촉금지
 - 닭·오리 사료차량을 구분하여 사료 공급을 받도록 할 것
 - 벌크사료의 경우 오리는 오리사료 전용 지정차량으로만 운반
 - 닭·오리 분뇨는 치우지 말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소독만 실시

- 부득이하게 치울 경우에도 농장외부로는 반출 금지
- 동물약품 운반차량·관계자 농장출입 금지, 농장주가 직접 구입·운반
- 가축운반차량(어리장차)은 닭과 오리를 각각 구분하고, 소독 철저
- 닭 농가와 오리농가 상호 접촉 금지, 닭·오리 농가간 모임도 지양

④ 일반인 농장출입 통제

- 농장 출입구에 [방역상 출입 통제] 등 안내문 부착
- 농장문을 항상 잠가 놓아서 택배회사 직원 등이 무심코 출입하는 일을 방지하고, 농장 출입 통로에 줄을 매어 놓는 등 일반인의 출입 통제

닭·오리 부화장 방역수칙

① 모든 사람과 차량 등에 대해 출입을 통제할 것

- 출입구는 하나만 남기고 모두 폐쇄하고 잠금상태 유지
-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한 기록을 일지 형태로 작성·유지
- 의심이 가는 사람과 차량 출입금지 및 방역당국에 신고
- 야생조류 등 접촉방지를 위한 담장, 울타리 상태 점검 및 미비시 보완
- 출입구, 창문, 하수구, 배수구 등에 방서·방충 시설 설치

② 철저한 소독으로 전염병원인체 유입을 방지할 것

- 차량 및 발판소독조는 바퀴나 장화가 충분히 소독될 수 있도록 운영
- 소독약은 유형에 따라 2~3일마다 교환 또는 보충하되 소독조내 오물 수시 제거
- 바퀴뿐만 아니라 차체 내·외부 세척·소독 철저

News

- 부화장 및 기타 부속시설 출입구마다 발판소독조 설치
- 난좌, 발육기, 장갑 등 사용물품 소독
- 종사자 외출 및 귀가시 손발 세척

③ 적정 소독효과를 위해 소독약 희석비율을 준수할 것

- 성분이 서로 다른 소독약의 혼합사용 절대 금지
- 부식성이 강한 염기제제는 차량 등 알루미늄 재질 부속품 사용금지 및 눈·피부 접촉 금지
- 포르말린제제는 사람·가축에 직접 사용 금지

닭·오리 사료 운반차량 방역수칙

① 사료 제조업체 및 운반자(대리점, 지역 농축협 등)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

- 닭과 오리의 사료는 반드시 구분하여 공급하고, 오리사료 운반차량의 닭농장 출입을 금지함
- 오리사료는 반드시 전량 지대포장 형태로 공급할 것
- 벌크 및 톤백형태로 운반할 경우에는 시도(축산과)에서 “오리사료 전용운반차량”으로 지정 받아야 함
- 돼지사료 벌크운반차량으로 오리사료 운반은 불가능하나, “오리사료전용운반차량”으로 지정 받아야 하며, 닭 및 소 사료의 운반은 금지됨
- 사료공장·대리점·농장 출입 때마다 소독 실시
- 시도 발급 지정서를 차량에 비치하고 “전용차량 스티커”를 조수석 전면유리 하단에 부착한 후 운행

② 농가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

- 사료전용차량지정서 미소지 및 “전용차량 스티커” 미부착 사료운반차량의 농장출입을 차단할 것
- 아울러, 지정서 및 스티커가 없는 차량은 시군 등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

- 지정서 소지 및 스티커 부착차량의 농장 출입시 소독을 실시
- 자가 트랙터·경운기 등 사료 운반수단을 마련하여 농장 또는 마을입구에서 축사까지 사료 직접 운반

닭·오리 운반차량 방역수칙

① 운반업체 및 운반자 준수사항

- 시·도(시군) 축산과에 소속, 차량번호, 운전사 성명 등을 신고하고 “오리출하 전용 운반차량”으로 지정 받은 후 운행
- 닭 운반자는 시도로부터 지정승인은 불필요하나, 닭출하 전용 운반차량 스티커 부착 후 운행
- 어떠한 경우에도 닭 운반차량의 오리운반과 오리 운반차량의 닭 운반을 금지함
- 차량에 시·도 발급 전용차량지정서를 비치하고 전면유리 조수석 하단에 “전용 운반차량” 스티커 부착 후 운행
- 농가 도착시 “전용차량 지정서”를 제시하고 출입시 소독 실시
- 운반자는 상차 등을 이유로 축사내부에 들어가지 말 것
- 도입(계)장 도착시 “전용차량 지정서”를 제시하고 출입시 소독 실시

② 닭·오리 농가 준수사항

- 전용차량 지정서와 “오리출하 전용 운반차량” 스티커를 확인(닭 농가는 “닭출하 전용 운반차량” 스티커만 확인)
- 지정서(오리) 및 전용운반차량스티커가 없는 차량은 농장진입을 차단하고 시·군 등 방역당국에 신고

- 운반차량은 반드시 소독 실시 후 출입을 허용하되, 운반자의 축사내부 출입을 금지할 것
- 농장 자체 운반시 시도(시군)에 신고 후 차량에 스티커 부착

- ③ 닭 · 오리 도축장(방역관 또는 자체검사원) 준수사항
- 출하차량 도착시 “전용 운반차량” 여부 확인 후 진입 허용
 - 운반차량 출입시 소독실시여부 지도 · 감독 철저
 - 미지정 차량의 오리운반 적발시 시군 등 방역당국에 통보

닭 · 오리 도축장 방역수칙

- ① 닭 · 오리 운반차량 관리
- 닭 · 오리 전용 운반차량에 한하여 출입을 허용
 - 차량번호, 출입시간, 경유농장 등을 기록할 것
 - 자체검사원 및 가축방역관은 하차 전 차량소독과 외부에서 1차 임상관찰 실시
 - 자체검사원 및 가축방역관은 하차시 개체별로 2차 임상관찰 실시
 - 하차 즉시 세차장에서 차량을 소독(바닥 · 하체 · 바퀴 등 차량 전체)하되, 수의과학검역원 권장소독약으로 소독 실시
- ② 일반 출입차량 관리
- 도축장 입구에 설치된 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후 출입 허용
 - 모든 출입차량 차량번호, 운전자성명, 출입시간 등 기록 유지
- ③ 종업원 등 출입자 통제 · 소독
- 도축장 입구에서 필요한 인원만 출입토록 통제
 - 모든 출입자에 대하여 소독 실시(특히, 손 · 신발 소독)

- ④ 계류장 · 도축시설 주변소독
- 작업 전 · 후 계류장, 도축시설 주변 소독 실시
 - 도축시설은 완전히 세척을 한 후 소독 실시
 - 도축부산물, 퇴비(액비)는 매일 소독 실시

축산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지침

- ① 외국인 근로자 채용전 확인을 철저히 합니다.
- 첫째 : 신분확인 철저
 - 성명, 여권번호, 가족사항, 출신국가에서의 직업 등 확인
 - 둘째 : 국내 타 농장에서 근무한 경력 등을 확인하여 채용시 방역상 위해가 없는지 확인
- ②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방역조치를 철저히 합니다.
- 첫째 : 마을회관 등 가축이 없는 곳에서 채용절차를 밟을 것
 - 둘째 : 채용이 성사되면 그 장소에서 소독 등 방역 조치 철저
 - 휴대품을 확인하여 축산물 등 음식물은 소각 · 폐기
 - 의복 · 신발 · 가방 등 개인용구에 대하여 세척 · 소독 등 조치
- ③ 농장 근무시에는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합니다.
- 첫째 : 농장청결 등 위생과 소독 등 방역, 질병의 심층 발견시 신속한 신고 등 방역준수사항 교육
 - 필요시 가축위생시험소와 수의과학검역원에 위탁 교육
 - 둘째 : 농장 출입시 목욕을 하고 깨끗한 의복과 신발 착용
 - 셋째 : 농장주변 정리 등 업무수행 후에는 소독 후 축사출입
- ④ 외국인 근로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합니다.
- 첫째 : 타 농장 방문을 자제토록 하고 외국인 근로

News

자의 농장방문 금지

- 가급적 전화를 사용토록 권고

- 둘째 : 휴일 등 외출시에는 귀가 후 주요행적을 파악 기록관리하고 농장 밖에서 소독 등 방역조치 후 출입
- 셋째 :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친지 등은 시내 등 외부에서 만나도록 조치

농산물품질관리원



상·하반기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741건 적발 품목별로는 육류, 업태별로는 음식점 위반 높아

경남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경남농관원”이라 함)은 2010년 11월 현재까지 소비자를 속이는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서 35개 단속반(특사경 130명 포함)을 편성하고 농산물 명예감시원 2,400여명을 동원하여 경남, 부산, 울산시 전역에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그 결과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위반한 741개 업소를 적발,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 판매한 483개소에 대하여서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 없이 판매한 258개 업소는 1억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지역별 원산지 거짓·미표시 단속 현황 (2010.1.1~11.15까지)

| 구분 | 거짓표시(건) | 미표시(건) | 계(건) | 과태료(천원) |
|----|---------|--------|------|---------|
| 부산 | 143 | 89 | 232 | 31,000 |
| 울산 | 52 | 28 | 80 | 17,000 |
| 경남 | 288 | 141 | 429 | 62,000 |
| 계 | 483 | 258 | 741 | 110,000 |

단속된 품목별로 보면, 육류 424건(57.2%), 농산가공품 161건(21.7%), 한약재류 25건(3.4%), 화훼류 22건(3.0%), 버섯류 20건(2.7%), 근채류 17건(2.3%), 과

실류 13건(1.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별첨자료 1, 2참고>

- 원산지 거짓표시 : 육류 348건(72.0%), 농산가공품 93건(19.3%), 한약재류 11건(2.3%), 버섯류 8건(1.7%)
 - 원산지 미표시 : 육류 76건(29.5%), 농산가공품 68건(26.4%), 화훼류 21건(8.1%), 특용작물류 20건(7.8%)
- 위반업소 741개소를 업태별로 구분해 보면, 음식점 425개소(57.4%), 가공업체 57개소(7.7%), 식육점 51개소(6.9%), 슈퍼 36개소(4.9%), 도매상 20개소(2.7%), 노점상 16개소(2.2%), 건어물상 15개소(2.0%), 한약상 14개소(1.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남농관원에서는 위와 같이 육류와 음식점 단속실적이 높게 나타난 것은 한우판매 음식점, 휴가철 유명음식점, 하절기 축산물 판매업체 등 시기별·테마별 특별단속을 벌여 단속 효과를 높인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은 음식점 영업자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055-275-606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naqs.go.kr], [www.kn.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 최고 200만원

▶벌칙

- 허위표시 :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음식점 :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 미표시 : 위반물량에 따라 5만원~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음식점 : 100만원~1,000만원 이하 과태료)



aT, 식육가공 교육기관 간 MOU 주선

한-EU FTA 타결에 따라 축산물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aT(농수산물유통공사)가 국내 식육산업 체질강화와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나선다.

aT 유통교육원은 지역별 전문교육과정간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4일 수원 aT 유통교육원에서 '건국대 축석 식육가공·유통전문가과정' (과정장 김천제 교수)과 '상지대 식육가공·유통전문가양성과정' (과정장 정구용 교수)간 MOU 체결을 주선했다.

aT 유통교육원은 농산물유통 혁신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04년부터 지역별로 특화된 전문교육과정을 개설,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2008년부터는 건국대와 상지대를 식육가공분야 위탁기관으로 선정, 교육 저변을 확대해가고 있다.

양측은 앞으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인력풀 제공, 교육수료생 인적네트워크 구축, 식육가공·유통분야 세미나 및 워크숍 공동개최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건국대 김천제 교수는 "aT 유통교육원의 노력으로 식육가공분야 교육기관간 협력관계가 체결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남상원 유통교육원 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남상원 aT 유통교육원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식육가공 교육과정들의 시너지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적극 지원하는 등 거점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I, 전파경로 밝힌다

철새에 인공위성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 원인과 전파 경로를 밝혀내는 연구가 내년부터 시작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06년 10월부터 3년간 전국 철새 서식지에서 청둥오리 등 철새 20여 종 1670마리의 혈액과 분변 5116점을 채취해 AI 바이러스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바이러스는 나오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가 이뤄진 것은 AI가 철새 등 야생조류로 인해 국내에 유입됐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AI를 퍼뜨리는 발생원의 하나로 지목된 철새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P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좀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해진다. 이에 환경과학원은 내년부터 고니, 오리류의 철새에 '인공위성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해 국제 이동경로 등을 분석하고 AI 확산 경로를 파악할 계획이다.

